성주군 4세대 이상 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

의 안 번 호	

제출일자 : 2015 9월 일
제 출 자 : 성 주 군 수

1. 제정이유

「기초연금법 시행령」제23조 제4항 규정에 기초연금과 유사한 성격의 급여·수당을 지급하는 자치단체에 대하여 국가부담비율에서 100분의 10을 뺀 비율을 부담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, 군비 부담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폐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○ 현행 조례 폐지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 : 「기초연금법 시행령」제23조 제4항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.
다. 합 의 : 해당 없음.
라. 입법예고 : 의견없음.(2015.8.11.~8.31)

성주군 조례 제 호

성주군 4세대 이상 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

성주군 4세대 이상 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